

「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1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-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 및 주거환경의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.
-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명시(안 제5조 ~ 제6조)
-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규정(안 제7조)
-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(안 제8조 ~제9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서 ‘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’을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, 「청년기본법」 제20조에서 ‘지자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 및 청년 인구 정착유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)에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○ 안 제5조(지원대상)에서는 우리 군 사업 대상의 조건을 명시함.

※ 대상조건: ① 단독 세대 및 무주택 청년, ② 평창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
(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, 소득수준 등 기타 조건은 군수가 정함)

○ 안 제6조(지원 제외 대상)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
다른 법령 등에 중복되는 지원 및 취지와 부적합한 지원을 방지
하고자 함.

< 지원 제외 대상 >

1.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
2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
3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
4.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5.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해당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6.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○ 안 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에서는 지원금액 산정기준 및 한도,
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,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
제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
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○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인

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의 정착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.

다만,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¹⁾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입법취지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의 논의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